

# 안전 이제는 책임이다

– 법인과 실치사법 이제는 도입해야 하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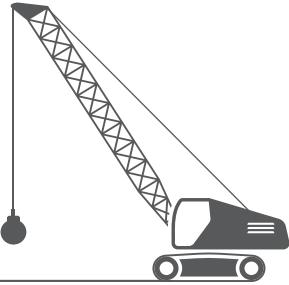
일시 | 2017. 7. 4(화) 14:00

장소 | 코엑스 컨퍼런스센터 327호





# CONTENTS



개요 .....	5
주제 발표 .....	7





## “안전! 이제는 책임이다”

### 법인과 실치사법 이제는 도입해야 하나?

투자가 아닌 낭비로 안전을 바라보는 사회적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불안전한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사회를 구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

#### [세미나 개요]

- 일시/장소 : 2017.7.4(화) 14:00/ 코엑스 컨퍼런스센터 327호
- 참석 대상 : 안전보건 관계자, 안실련 · 학회 회원 등
- 주최/후원 : 안실련 · 한국안전학회 /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 [주요 식순]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4:00~14:05	5	개회선언 / 국민의례	
14:05~14:10	5	대 회 사	안실련 이채필 공동대표
14:10~14:15	5	인 사 말	한국안전학회 하동명 회장
14:15~14:20	5	축 사	안전보건공단 이영순 이사장
14:20~14:25	5	경과 보고	안실련 장기창 안전정책연구소장
14:25~15:10	45	주제 발표 “법인과 실치사법 이제는 도입해야 하나”	한성대학교 박두용 교수 (한국안전학회 부회장)
15:10~16:10	60	지정 토론	
16:10~16:20	10	청중 토론	
16:20		강평 및 폐회	

#### [토론 및 참석자]

구 분	소 속	서명 및 직위	비 고
좌장	안 실 련	정재희 부대표	
	한국노총	조기홍 실장	산업안전보건연구소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국장	
	한국경총	전승태 산업안전보건팀장	
	중소기업중앙회	정육조 인력정책실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진우 교수	
	한성대학교	최기홍 교수	안실련 정책연구소 부소장
	고용노동부	김부희 산재예방정책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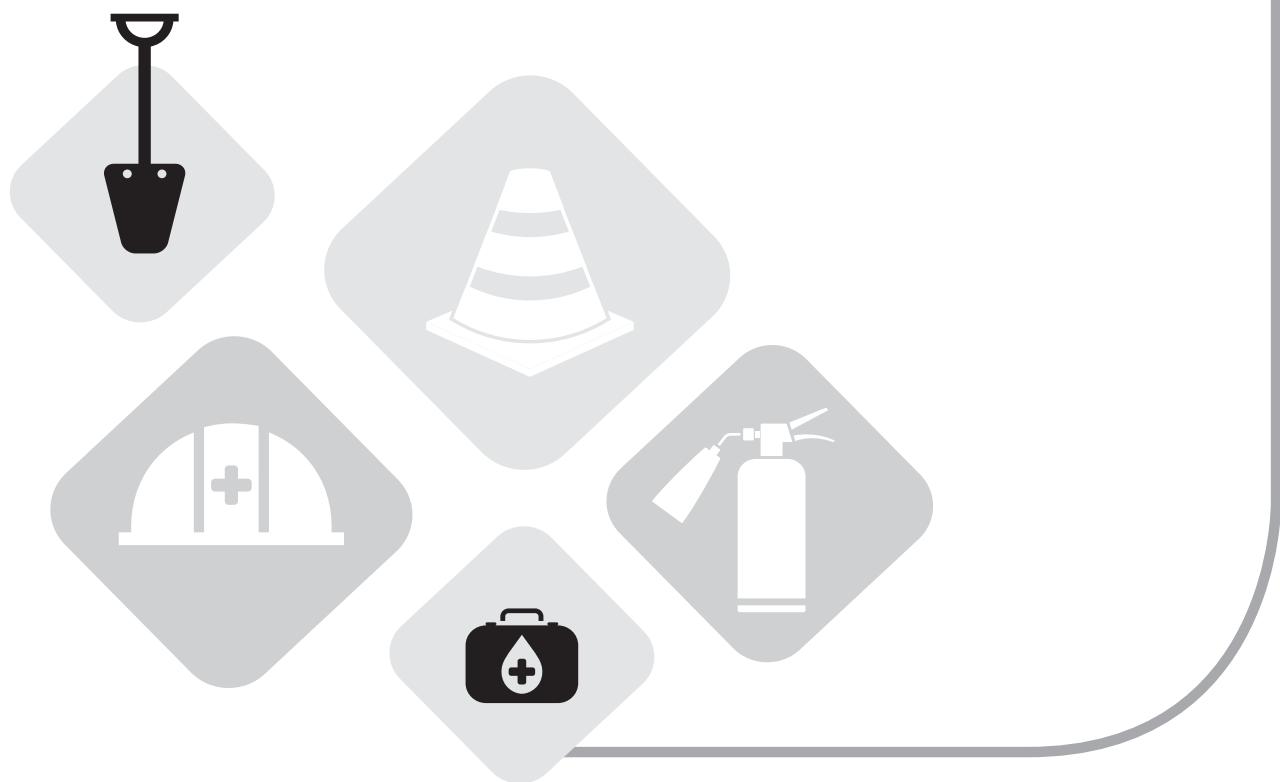
# 주제 발표

## 법인과 실치사법(기업살인법)

도입해야 하는가?

도입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도입해야 하는가?

한성대학교 박두용 교수





“안전은 책임이다” 정책 토론회  
한국안전학회, 안실련

## 법인과 실치사법(기업살인법)

– 도입해야 하는가? 도입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도입해야 하는가? –

2017. 7. 4.

한성대학교 박두용

## 법인과 실치사법 (기업살인법)

2





ELIZABETH II

c. 19



##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2007 CHAPTER 19

An Act to create a new offence that, in England and Wales or Northern Ireland, is to be called corporate manslaughter and, in Scotland, is to be called corporate homicide; and to make provision in connection with that offence.

[26th July 2007]

**B**E IT ENACTED by the Queen's most Excellent Majesty, by and with the advice and consent of the Lords Spiritual and Temporal, and Commons, in this present Parliament assembled, and by the authority of the same, as follows:—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 Health and Safety Law in UK

- 1.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 (HSSWA)**
- 2. Health and Safety (Offences) Act 2008 (in force Jan. 2009)**
- 3.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 1.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 (HSWA)

- S.37 HSWA for Directors/Managers
- Possible prison sentence for individuals
- Penalty maxima
  - £ 5k or £ 20k for summary offence in the lower courts, depending on offence; unlimited fine for indictable offence;
  - imprisonment not available for most offences (but up to 6 months in Magistrate Court / 2 years in Crown Court for few offences e.g. failing to comply with a prohibition notice or breaching a licensing requirement)

5

## 2. Health and Safety (Offences) Act 2008 (in force Jan. 2009)

- New penalty maxima
  - £ 20k fines in the lower courts for nearly all summary offences, unlimited fines in higher courts
  - imprisonment for nearly all offences - up to 12 months in Magistrate Court and 2 years in the Crown Court

6





### 3.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 Introduces new manslaughter offence for **organizations**
- In force since 6 April 2008
- The offence –
  - “Section 1(1): an organization to which this section applies is guilty of an offence if the way in which its activities are managed or organized –
    - (a) causes a person’s death, and
    - (b) amounts to a gross breach of a relevant duty of care owed by the organization to the deceased.”

7

### 3.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 Penalties
  - Unlimited fine (suggested starting point £ 500k)
  - Publicity order
  - Remedial order
  - Fines are expected to be
    - 5 to 10% of turnover (Transco £ 15m = less than 1% of turnover)
    - 2.5% of turnover for offences that come under the HSWA
    - Possible equity fines
  - Individual prosecutions will still remain under the HSWA
    - S.37 HSWA for Directors/Managers, S.7 HSWA for Employees
    - Possible prison sentence for individual

8

### 3.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 Introduces new manslaughter offence for **organizations**
- In force since 6 April 2008
- The offence –
  - "Section 1(1): an **organization** to which this section applies is guilty of an offence if the way in which its **activities are managed** or organized –
    - (a) causes a person's death, and
    - (b) amounts to a **gross breach** of a **relevant duty** if care owed by the organization to the deceased."

9

- Qualifying Organization
  - a corporation
  - a partnership
  - a government departments/ local authorities
  - a police force
  - a trade union / employer's association

10





- Causes a person's death

- The prosecution must always show a causal link between the act / omission and the death
- The act or omission must be a substantial cause of death, but it need not be the sole or main cause of death. It must have “more than minimally, negligibly or trivially contributed to the death”.

11

- Relevant Duty if Care

- Those duties owed under the law of negligence, including:
  - Employer duties
  - Occupier duties
  - Duties under supply of goods and services
  -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work
  - Using or keeping plant / vehicle

12

- **The Gross Breach**

- The breach of duty of care is only a "gross" breach if it falls far below what could reasonably be expected of the organization in the circumstances, i.e. what would the reasonable person think.
- Consideration to health and safety laws

13

- **Gross breach and senior management**

- The breach must be directly attributable to the way senior management operate the business
- Consideration to be given to:
  - attitudes
  - policies
  - systems
  - accepted practices

14





- Who are senior management?
  - Those who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e management of the whole organization or a *substantial* part
  - Therefore, those who are able to *influence* the running of the organization, but not just the 'controlling mind'

15

- The Exemptions
  - Certain exemptions to prosecution exist:
    - Comprehensive Exemptions (e.g. military / policy activities)
    - Partial Exemptions (where duty still owed as employer/occup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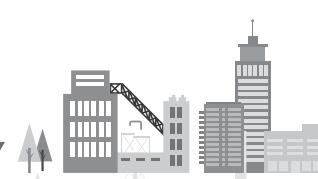
16



17

- Step 1. Harm and culpability are very serious by definition. There is only 2 Offence Category A (high) and B (low) on 4 questions:
  - How foreseeable was serious injury?
  - How far short of the appropriate standard did the offender fail?
  - How common is this kind of breach in this organisation?
  - Was there more than 1 death, or a high risk of further deaths, or serious personal injury in addition to death?

18





### Very large organisations

Where an offending organisation's turnover or equivalent very greatly exceeds the threshold for large organisations, it may be necessary to move outside the suggested range to achieve a proportionate sentence.

#### Large organisations (Turnover more than £ 50 million)

Offence category	Starting point	Category range
A	£ 7,500,000	£ 4,800,000 - £ 20,000,000
B	£ 5,000,000	£ 3,000,000 - £ 12,500,000

#### Medium organisations (Turnover £ 10 million to £ 50 million)

Offence category	Starting point	Category range
A	£ 3,000,000	£ 1,800,000 - £ 7,500,000
B	£ 2,000,000	£ 1,200,000 - £ 5,000,000

#### Small organisations (Turnover £ 2 million to £ 10 million)

Offence category	Starting point	Category range
A	£ 800,000	£ 540,000 - £ 2,800,000
B	£ 540,000	£ 350,000 - £ 2,000,000

#### Micro organisations (Turnover up-to £ 2 million)

Offence category	Starting point	Category range
A	£ 450,000	£ 270,000 - £ 800,000
B	£ 300,000	£ 180,000 - £ 540,000

19

## Corporate Manslaughter for Individual

### 1) Must owe a duty of care to deceased

- a) As employer
- b) Occupier of premises
- c) Supplier of goods /services; carrying out of construction or maintenance; carrying out of any other activity on a commercial basis; use or keeping of plant /vehicles
  - Breach of duty must be gross – conduct far below what can reasonably be expected of the organization in the circumstances
  - Jury must consider failure to comply with H&S legislation, seriousness of failure and risk of death that failure posed

20

## Corporate Manslaughter for Individual

### 2) Senior managers

- A substantial part of the failure must have been at a senior level
- Senior level means the people who make significant decisions about the organization
- Links into the importance the Act places upon a 'safety culture' within the organization
- Act focuses on systems of work and away from individual fault

21

## 9-steps Process for Individuals



22





## Culpability

Culpability	Factor
Very High	✓ Where the offender intentionally breached, or flagrantly disregarded, the law
High	✓ Actual foresight of, or willful blindness to, risk of offending but risk nevertheless taken
Medium	✓ Offence committed through act or omission which a person exercising reasonable care would not commit
Low	✓ Offence committed with little fault

The harm is determinate by the same mechanism than for the organisations:

- HS: table (seriousness + likelihood) + public/worker exposed + significant cause.
- FSFH: table likelihood.

23

	Starting point	Category range
<b>Very high culpability</b>		
Harm category 1	18 month's custody	1-2 years' custody
Harm category 2	1 year's custody	26 weeks'-18 months' custody
Harm category 3	26 weeks' custody	Band F fine or high level community order-1 year's custody
Harm category 4	Band F fine	Band E fine-26 weeks' custody
<b>High culpability</b>		
Harm category 1	1 years' custody	26 weeks'-18 months' custody
Harm category 2	26 weeks' custody	Band F fine or high level community order-1 year's custody
Harm category 3	Band F fine	Band E fine-26 weeks' custody
Harm category 4	Band E fine	Band D fine-Band E fine
<b>Medium culpability</b>		
Harm category 1	26 weeks' custody	Band F fine or high level community order-1 year's custody
Harm category 2	Band F fine	Band E fine-26 weeks' custody
Harm category 3	Band E fine	Band D fine or low level community order-Band E fine
Harm category 4	Band D fine	Band C fine-Band D fine
<b>Low culpability</b>		
Harm category 1	Band F fine	Band E fine or medium level community order-26 weeks' custody
Harm category 2	Band D fine	Band C fine-Band D fine
Harm category 3	Band C fine	Band B fine-Band C fine
Harm category 4	Band A fine	Conditional discharge-Band A fine

24

##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적용사례

### 1. Cotswold Geotechnical Holdings

- 회사개요: 지질탐사 등을 하는 5인의 소규모회사(지주회사)
- 사건 개요
  - 사망자 1명 (지질학자 Alexander Wright)
  - 사망일 2008년 9월
  - 사고개요 Gloucestershire의 Stroud 근처 발굴현장 참호가 봉괴 약 3.8m 위에서 안전발판 등이 없는 곳에서 작업 중 추락 사망한 사건
- 판결
  - 주의의무 위반 벌금 £385,000

25

### 2. JMW Farms (JMW 농장)

- 회사개요: 북부 아일랜드의 JMW 농장
- 사건 개요
  - 사망자 1명 (Robert Wilson, 45세)
  - 사망일 2010년 11월 5일
  - 사고개요: 지게차에서 떨어진 대형 금속통에 의해 협착 사망. 지게 차에 제대로 매달지 못한 금속통이 떨어짐
- 판결
  - 2012.5.8
  - 주의의무 위반 벌금 £187,500 + 송사비용 £13,000

26





### 3. 라이온 스틸

- 회사개요: 라이온 스틸 (Lion Steel Limited)
- 사건 개요
  - 사망자 2명 (Steven Berry, 45세)
  - 사망일 2011년 7월 11일
- 판결
  - 주의의무 위반 벌금 £480,000 + 비용 £84,000

27

### 4. Murray and Sons

- 회사개요: Murray and Sons
- 사건 개요
  - 사망자 2명 (Norman Porter, 47세)
  - 사망일 2012년 2월
  - 사고개요: 동물 사료통에 빨려 들어가 사망
- 판결
  - 주의의무 위반 벌금 £100,000 + 비용 £10,000

28

## 5. PS & JE Ward Ltd, (2012.11)

- 회사개요: PS & JE Ward Ltd, (2012.11)
- 사건 개요
  - 유압식 리프트 트레일러가 고압선을 쳐서 근로자 감전사
  - 사망일 : 2010. 7.15
- 판결
  - 2012.12.19
  - 주의의무 위반 벌금 £4,277,310

29

## 6. MNS Mining Ltd (January 2013)

7. Princes Sporting Club Ltd, fined entire company assets November 2013
8. Mobile Sweepers (Reading) Ltd, fined £8,000 plus costs of £191,000, March 2014
9. Pyranha Mouldings Limited, sentenced for corporate manslaughter and fined £200,000, plus costs of £90,000, March 2015
10. Huntley Mount Engineering, fined £150,000 for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mpany director jailed for eight months, JULY 2015
11. CAV Aerospace Ltd. convicted of corporate manslaughter and fined £600,000 and £400,000, plus costs of £125,000, July 2015
12. Baldwins Crane Hire Limited convicted of corporate manslaughter and fined £700,000 plus costs, December 2015

30





13. Sherwood Rise Limited – admitted a charge of corporate manslaughter, December 2015
14. Linley Developments, convicted of corporate manslaughter and fined £200,000, plus costs of £25,000, January 2016
15. Sherwood Rise Limited – charged with corporate manslaughter, fined £30,000 and company director jailed for three years and two months, February 2016

31

## 우리나라 사례연구

**LG화학 청주공장 폭발사고 8명 사망·3명 중상**

- 2012. 8. 23. 10:16
-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LG화학 청주공장
-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 재료공장에서 휘발성 용매인 다이옥산(Dioxane)이 담긴 드럼통이 폭발 (1,4 다이옥신을 드럼통에 담는 과정에서 유출된 유증기가 정전기로 폭발)
- 8명 사망·3명 중상

**LG화학 청주공장 폭발사고 8명 사망·3명 중상**

- 설계도대로 공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전기 방지 시설이나 안전보호구 착용 없이 작업을 진행
- "작업장 바닥을 대전방지용으로 시공하도록 설계 돼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산업안전보건 공단에는 설계도대로 시공한 것처럼 허위 보고





### LG화학 청주공장 폭발사고

### 처벌결과

- 2013. 4. 11 1심 판결
-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LG화학 관계자들  
에게 모두 유죄가 판결
  - 상무 박모(44)씨 징역 1년
  - 팀장 김모(44)씨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 안전관리담당자 손모씨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 “폭발사고를 오로지 3명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보며 노조도 관계자들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점  
을 형을 정하는데 반영했다” (윤이나 판사)
- 산업안전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LG화학 법인  
유죄 벌금 3000만원 선고

### LG화학 청주공장 폭발사고 : 8명 사망·3명 중상

#### 시간별 사망자 발생일지

- 2012. 8.23. 오전 10:16 폭발사고
- 2012. 8.23 사고당시 1명 사망 부상 15명
- 2012. 8.24 10:55 1명 사망
- 2012. 8.24 23:25 1명 사망
- 2012. 8.27 밤 1명 사망
- 2012. 8.28 05:30 1명 사망
- 2012. 9. 1 24:00 1명 사망
- 2012. 9.11 1명 사망
- 2012. 9.12 1명 사망

### 구미 불산누출사고

- 2012. 9. 27 15:43
- 경북 구미시 산동면 구미국가산업단지 4단지
- (주)휴브글로벌
- 직원들이 20톤짜리 탱크로리에서 공장 저장탱크로 불산(불화수소산) 주입하던 중 탱크로리의 뚜껑 열리며 폭발
- 현장 직원 4명, 방문작업장 1명 사망
- 사고지점 3km 내 봉산리, 임천리 주민과 회사직원 등 1000여 명 인근 마을회관과 산동초교 등으로 대피

### 구미 불산누출사고

- 9. 28. 저녁 불산(불화수소산) 누출사실 보도
  - 직원 5명이 숨지고 마을주민 18명이 부상 소식
- 소방당국 화학대 투입해 폭발 일어난 20t 탱크로리 밀봉 작업 실시. 밤새 사고 현장 주변 중화작업 실시
- 구미시 국립환경과학연구원의 피해지역 오염도 측정
- 사고지역 반경 50m 이내 5개 업체에 임시 휴업 요청
- 사고지역 인근 옥계초등학교와 산동초등학교 등 6개 유치원, 초·중학교 28일 휴교 결정





### 구미 불산누출사고

- 9. 29. 유독가스 확산으로 인해 인근 마을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주민들이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보도
- 10. 1 농작물 피해 보도 늘어남
- 10. 2. 구미시 농작물 피해 정밀조사 실시  
공익수의사 6명 동원 가축 임상관찰 및 치료 실시
- 10. 3. 불산에 노출된 가축들 기침, 콧물 등 집단 이상 증세 보인다는 내용 보도  
이구백 구미소방서장 온몸에 발진이나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보도
- 10. 4.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박명석 이장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인터뷰 통해 피해 심각성 알림

### 구미 불산누출사고

- 10월5일·6일 트위터상에서 특별재난 지역 선포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 급증
- 10월7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구미 사고 현장 방문.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 10월8일, 정부가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구미 불산 누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결정





안전! 이제는 책임이다.



### 삼성 불산사고

2013. 1. 27.(일)

- 14:11 STI서비스 정모(43)씨, 11라인 CCSS 탱크룸 불산 누출 최초 발견
- 14:33 STI서비스 정씨, 삼성전자 케미컬팀 11라인 담당자에게 불산 누출 보고
- 15:08 STI서비스 공모(31)씨, 삼성 GCS팀 간부 등 29명에 누출 사고와 비닐봉투 이용한 조치 보고
- 19:00 STI서비스 홍모(37)씨, 삼성전자에 "누출 심각, 밸브교체 필요" 유선 통보
- 23:32 삼성전자, STI서비스 김모(27)씨의 "누출량 증가, 밸브교체" 요청에 작업 승인

### 삼성 불산사고

2013. 1. 28.(월)

- 00:13~03:21 1차 작업, STI서비스 박모(34·사망) 파트장 등 3명 투입(밸브교체)
- 04:36 불산가스 재차 누출, 박씨 등 4명 2차 작업 시작
- 05:52 박씨, CCSS 입구에 공기 배출용 송풍기 설치
- 06:03 삼성전자 사업장내 가스감지기 경보
- 06:31 2차 작업 종료
- 06:53 삼성 소방대, 상부에 보고
- 06:56 삼성전자 환경안전팀 대원, 송풍기 추가 설치





### 삼성 불산사고

- 07:45 박씨,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으로 이송
- 10:00 박씨 서울 한림대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
- 13:00 박씨 한강성심병원서 사망
- 13:25 한강성심병원,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변사 신고
- 13:56 삼성전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불산누출 내용  
없이 협력업체 직원 사망사실만 신고(※삼성 첫 외  
부신고)
- 14:03 화성동부서, 영등포서로부터 변사사건 접수

### 삼성 불산사고

- 17:59 삼성전자 및 STI서비스, 대형 송풍기 철거
- 18:30 한강환경유역청 조사팀, 현장 도착
- 22:00 부상자 4명,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입원

**삼성 불산사고****처벌결과?****여수산단 대림산업 폭발사고**

- 2013.3.14 저녁 8시 50분 경,
- 여수산단 대림산업 제2공장 고밀도 폴리에틸렌 저장조  
저장조 내부 정기 점검을 위해 저장조를 비운 뒤 저장조  
아랫부분에 출입을 위한 구멍을 설치하던 중
- 화재의 원인은, 용접기로 구멍을 만든 뒤에 보조 시설을  
붙이려고 다시 용접을 시도하다, 용접으로 인한 불꽃이  
기체 등의 물질과 반응하여 폭발한 것으로 추정
-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사망, 근로자 11명이 중경상





### 여수산단 대림산업 폭발사고

### 처벌결과?

- 1심 판결
- 공장장 김 모씨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 대림산업 폭발사고 자체는 무죄
- 별도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벌금 3천만원 선고

### 여수산단 대림산업 폭발사고

### 처벌결과?

- 2심
-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 공장장 김모씨 징역 8월 실형선고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 공장장 김모씨 무죄
  - 대림산업(법인) 무죄

## 여수산단 대림산업 폭발사고 처벌결과?

- 대법원
- 2014. 5. 29. 상고심에서 원청업체의 안전조치 주의의무를 폭넓게 인정
- 김씨와 법인이 산업안전보건법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광주지법 항소부에 사건을 돌려보냈음
- (여기서 원청의 책임을 물은 것은 아니고 그 장소에 원청 근로자도 함께 작업하고 있었기에 원청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본 것임)

## 여수산단 대림산업 폭발사고 처벌결과?

- 파기 항소심
- 2014. 7. 3. 광주지법 형사항소 1부
-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 공장장 김모씨 징역 8월 실형선고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 공장장 김모씨 유죄 (다만 형량은 위의 그대로)
  - 대림산업(법인) 기획정된 벌금 3천만원 외에 벌금 500만원을 추가
  - 대림산업(법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추가유죄로 인정된 것은 하청근로자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던 대림산업 직영근로자도 다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안전보건 미조치로 책임을 물은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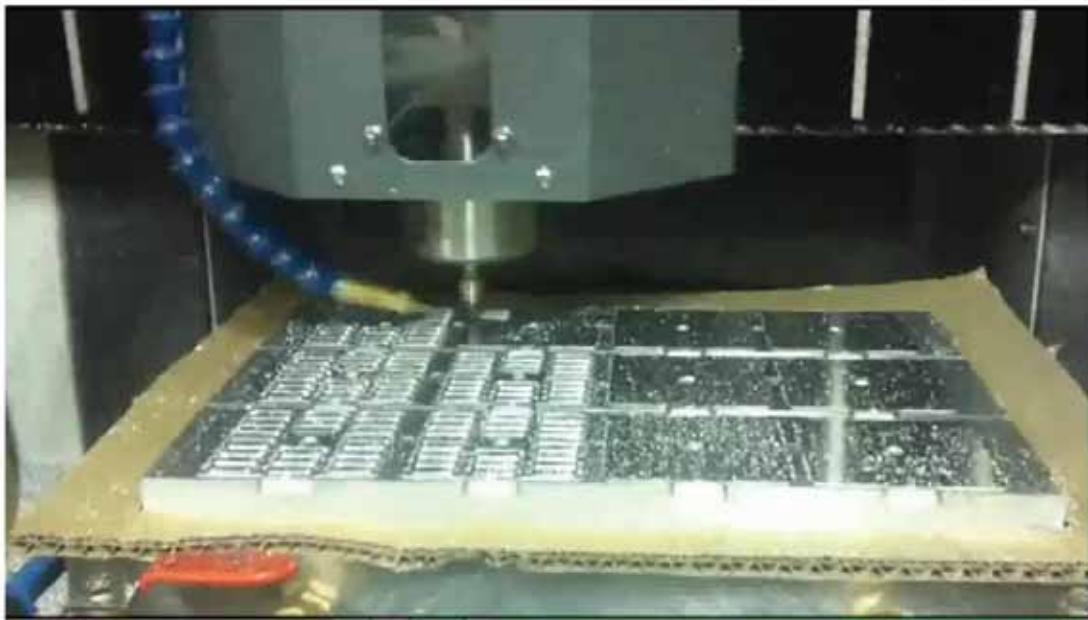


안전! 이제는 책임이다.

2016. 1.

## 메탄올 중독 실명사고 삼성전자 스마트폰 하청업체

CNC 가공 + 메탄올



## CNC 가공 공장



## CNC 머신 + 메탄올





## CNC 머신 + 메탄올

메탄올 농도 측정결과 1000~2000 ppm  
(기준: 200 ppm)

안전수준 : 100 ppm이하 유지  
평균수준은 20 ppm 이하가 정상

### 사고 사례 1. ○씨 (여, 29세)

#### 1. 인지 경위

- 16.1.15(금) 야간 근무 출근 전 메스꺼움 및 구토 증상  
21시경 출근  
증상 지속  
회사에 말하고 부천지역 대학병원 진료  
혈액 검사 상 이상소견 없다고 하여 복귀
- 16.1.16(토) 09시경 업무 종료 후 눈이 잘 보이지 않음

• 16.1.16(토) 9시 퇴근

귀가 후 피곤해서 잠  
(남편도 야간작업 피로로 생각)

뒤늦게 의식저하 및 실명증세가 심각함을  
깨달음

남편이 택시로 인근 이대 목동병원 응급실  
로 데리고 갑

• 16.1.18(월) 메탄을 중독 확인

• 16.1.19(화) 혈액투석 (심장내과)

→ 직업환경의학과(김현주 교수)에게  
협진 요청

사업장/공정 등 파악을 위한 문진

→ 실패

- 의식 혼미
- 사업장 명도 잘 모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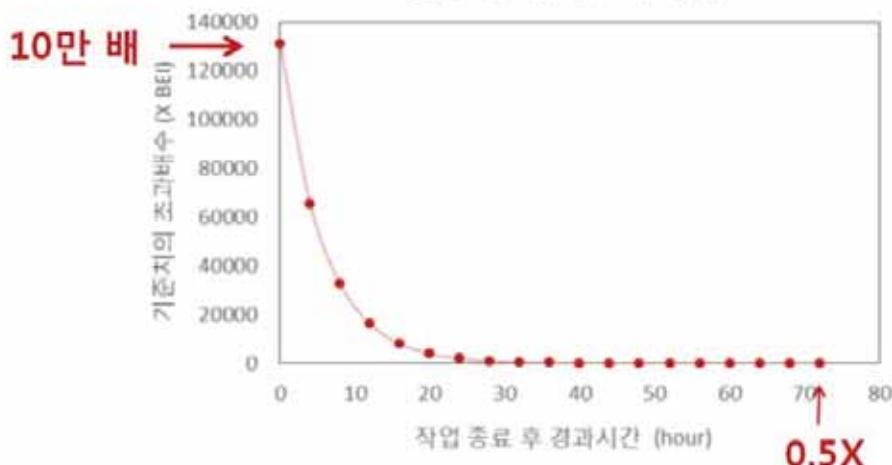


- 16.1.19(화) 소변채취      작업 종료 후 기준: 15 mg/L  
→ 7.6 mg/L 72시간 경과

일반적으로 알려진 반감기: 2-4시간

반감기를 가장 느린 4시간으로 가정하고

소변 중 메탄을 농도 추정치



- 16.1.20(수)

환자 의식 다소 회복

→ 사업장명 확인

→ 메탄을 사용 확인

→ 고용노동부 신고

- 16.1.21(목)

- 16.1.22(금)

부천지청에서 사업장 첫 감독

- 16.1.26(화)

임시건강진단

## 사고 사례 2. ♀씨 (남, 29세)

- 16.1.22(금) 부천지청에서 사업장 첫 감독
- 16.1.22(금) 메탄을 중독으로 부천성심병원에 입원



- 16.1.25(월) 앞의 환자가 이대 목동병원에서 퇴원할 때 환자의 보호자가 담당의사(김현주 교수)에게 동료 한 명이 비슷한 증상으로 부천성심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함.  
김현주교수 → 부천성심병원 주치의에게 전화  
→ 확인  
→ 고용노동부에 신고

## 사고 사례 3. ♂씨 (남, 25세)

- 15.12.22 D 사업장에서 일하기 시작
- 15.12.30 야간 근무 마친 후 구토 및 의식 저하  
→ 퇴근 후 하루 쉰 후 증상 더욱 심해져 수원 인근 대학병원 내원 후 입원 치료
  - 이 병원에서 담당의사는 메탄을 중독 (직업병)을 의심
  - 그러나 메탄을 중독으로 판단 및 판정할 근거가 없었다고 함  
환자 의식까지 혼미하여 제대로 확인 불가했다 함
  - 이후 노무사를 통해 산재를 신청하려 준비 중(원인은 과로로 하고자 했다고 함)





- 16. 1월 노무사를 통해 산재신청  
→ 사업주 확인

- 16. 2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에 상담
  - 산재 미가입 사업장이었기 때문에 상담
  - 부천지사에서 고용노동부에 보고

## 사고 사례 4. ○씨 (여, 28세)

- 16. 1. B 사업장, 인천 남동공단에서 이전 준비 중
  - 근로자 수 : 정규직 6명  
**비정규직 80명**

- 16. 2.11(목) ○씨 입사 야간근무조 (21-09시)



- 16. 2.11(목) ○씨 입사 야간근무조 (21-09시)

- 16. 2.16(화) 21시경 출근
- 16. 2.17(수) 02시경 조퇴 (몸 상태가 악화)

09시경 남편이 깨웠지만 못 일어남  
 → 피곤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그냥 둠  
 오후 8시경 눈이 안보이고 비몽사몽  
 → 119로 순천향병원으로 이송  
 → 시신경 손상, 의식불명

## 사고 사례 4. ○씨 (여, 28세)

- 16. 1. B 사업장, 인천 남동공단에서 이전 준비 중

- 근로자 수 : 정규직 6명  
**비정규직 80명**

- 16. 2.3(수) 고용노동부 감독

- 메탄을 사용 안한다고 했다 함
- 1개월 내 작업환경측정과 특검을 하도록 함

- 16. 2.11(목) ○씨 입사 야간근무조 (21-09시)





- 16. 2.11(목) ○씨 입사 야간근무조 (21-09시)

- 16. 2.15(월) 작업환경측정
- 소음
- 알루미늄 분진

- 16. 2.16(화) 21시경 출근
- 16. 2.17(수) 02시경 조퇴 (몸 상태가 악화)

09시경 남편이 깨웠지만 못 일어남  
→ 피곤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그냥 둠

오후 8시경 눈이 안보이고 비몽사몽  
→ 119로 순천향병원으로 이송  
→ 시신경 손상, 의식불명

고용노동부/공단 모두 메탄을 중독으로 파악이 안됨

- 16. 2.18일 이후

- 보호자가 계속 주치의에게 메탄을 중독(산재)을 이야기 함
- 신경과로 넘어 온 이후, 담당의사가 소변 중 메탄을 측정을 해보고자 인터넷으로 분석기관을 검색하던 중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찾음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전화 → 연구원에서 고용노동부에 신고

메탄올 중독사고

처벌결과?

73

법인과실치사법 (기업살인법) 도입

왜?

처벌강화를 위해서?

74





산업안전보건법

제9장 별칙 <개정 2009.2.6>

제66조의2(벌칙)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

지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  
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6.12>

1.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  
1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7조  
제1항, 제38조제1항, 제38조의4제1항 또  
는 제52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38조제5항, 제48조제4항 또는 제51조  
제7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9.2.6]

75

## 법인과실치사법 (기업살인법)의 이해

### 1. 영국(법)에서의 고민

- 전문경영자의 의도적/비의도적 과실(부작위)
- 권한(자)과 책임(자)의 괴리

### 2. 안전보건법의 법리 이해

- 작위법과 부작위법
- 목적론적 법(laws pursuing to goal)

76

## 1. 영국(법)에서의 고민

- 전문경영자의 의도적/비의도적 과실 (부작위)
  - 단기간 동안의 성과평가
  - 안전의 투자와 효과간 시간적 격차 (잠복기)
- 권한(자)과 책임(자)의 괴리
  - 아웃소싱(외주화) 및 사업장 분할
  - 중층적 관리체계
  - 중층적 하도급 관계

77

## 2. 현대사회에서의 리스크 관리 기본원리와 안전보건법의 법리

- 현대사회에서의 리스크 관리 기본원리
- 작위법과 부작위법
- 목적론적 법(laws pursuing to goal)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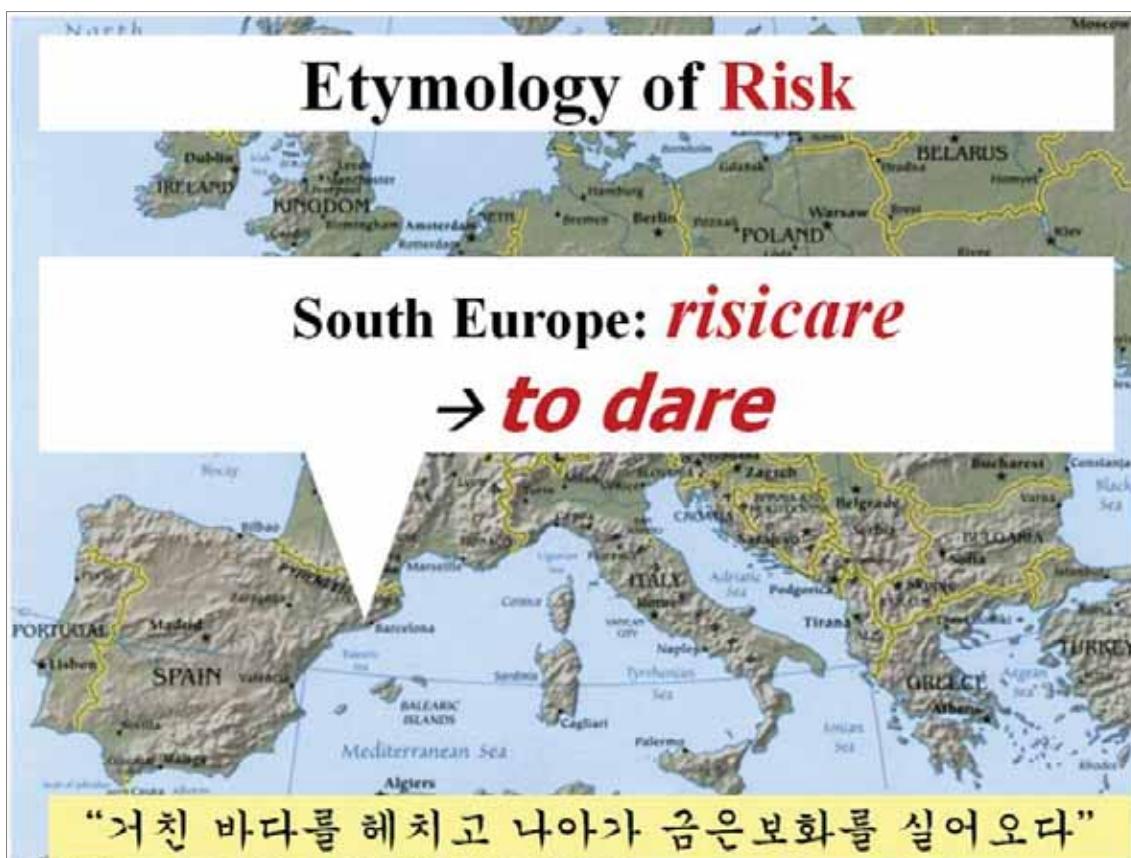




안전! 이제는 책임이다.

# 현대사회의 리스크

## 리스크 관리의 기본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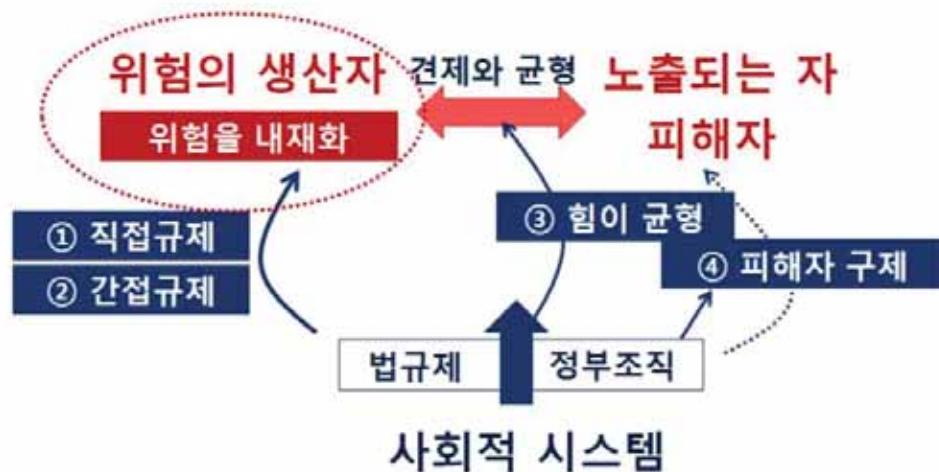
## 리스크 관리 기본원리 (1)

**Risk 란 누군가 돈을 벌려고 하는 과정에서 창출되는 위험**

- 1) 돈을 벌려고 하는 자에게 위험관리 책임을 귀속시키거나
- 2) 다수의 위험과 직접 관련된 부문은 이윤추구로부터 분리하여 공공화

### 사회 (위험이 일탈이 아닌 일상인 사회)

- 기본 작동원리 : 시장경제
- 구성원 : 다양한 이해당사자





## 범죄유형

### 作爲犯 vs. 不作爲犯

#### 범죄성립

어떤 행위를 하여

살인  
강도  
절도  
성폭행

어떤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

안전

#### 특징

1. (범죄인지) 안다

2. 의도가 있다.

1. (범죄인지) 모른다

2. 의도가 없다

53

## 범죄유형

### 作爲犯 vs. 不作爲犯

#### 범죄성립

어떤 행위를 하여

살인  
강도  
절도  
성폭행

어떤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

안전

#### 기본전제

안다

모른다  
→ 알려주어야 한다

54

## 범죄유형

### 作爲犯 vs. 不作爲犯

#### 범죄성립

어떤 행위를 하여

- 살인
- 강도
- 절도
- 성폭행

어떤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

안전

#### 형사정책방향

억제

진작

85

## 범죄유형

### 作爲犯 vs. 不作爲犯

#### 범죄성립

어떤 행위를 하여

- 살인
- 강도
- 절도
- 성폭행

어떤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

안전

#### 형사처벌

강하게  
하는 경향

강하게  
하지 않음

86





## 범죄유형

### 치안안전

- Actor
- 어떤 행위

### 사고안전

- Duty holder
- 어떤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

#### 처벌정책의 차별화

← 비난가능성  
← 차별/분리

#### 예방정책/개입의 차별화

알면서 의도적 으로	알면서 부득히 하게	혹시나 하면서 그냥	모르고 부득이 하게	알았다면 당연히 했을 것
------------	------------	------------	------------	---------------

87

## 범죄유형

### 치안안전

- Actor
- 어떤 행위

### 사고안전

- Duty holder
- 어떤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

가중처벌

홍보/교육/정보제공

지원

#### 예방정책/개입의 차별화

알면서 의도적 으로	알면서 부득히 하게	혹시나 하면서 그냥	모르고 부득이 하게	알았다면 당연히 했을 것
------------	------------	------------	------------	---------------

88

## 사고를 차별화하라 무엇이 나쁜 사고인가?

### 처벌의 3대 기준

- 1) 비난가능성 (나쁜 사고)
- 2) 책임역량
- 3) 결과의 크기(심각성)





## 안전사고 처벌(제재)전략

- 2가지 대전제

- 모든 사람이 잠재적 가해자
- 일부러 사고를 내는 사람은 거의 없음 (고의가 없음)



치안안전



사고안전

## 안전사고 처벌(제재)전략

- 개인범죄와 조직범죄

- 조직은 존립/목적 자체가 경제적 목적/가치지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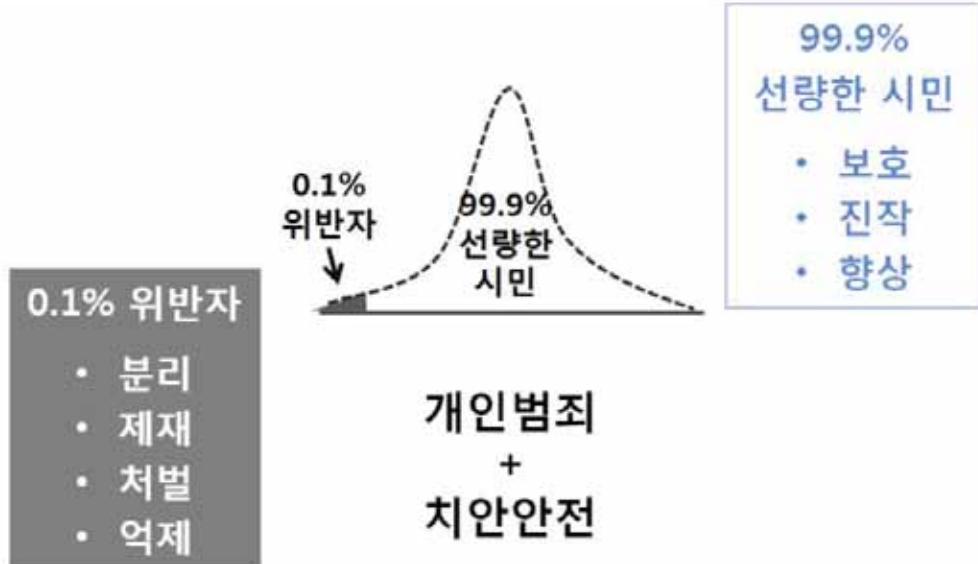


개인범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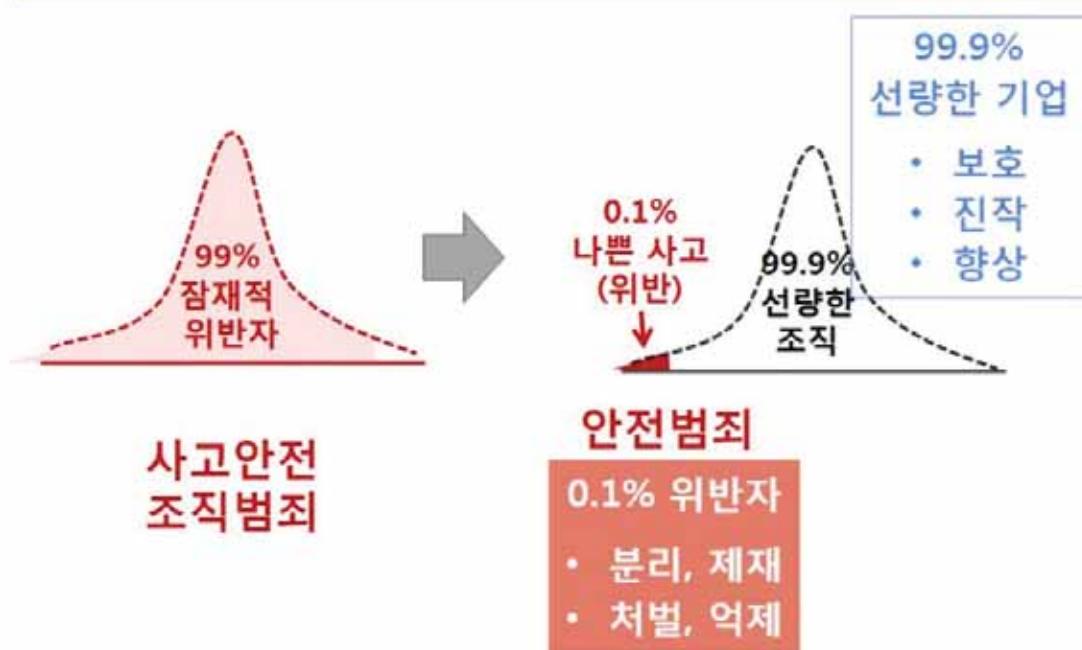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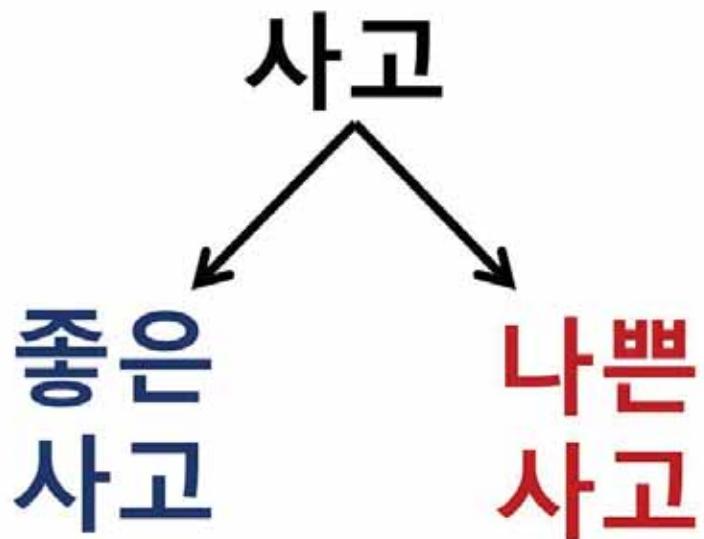
조직범죄

## 치안안전사고 처벌(제재)전략



## 안전사고 처벌(제재)전략





사고를 차별화하라  
무엇이 나쁜 사고인가?

## 사회적 합의

이것을 정하고, 합의(consensus)  
하는 것과 그 과정이 안전의 시작

## 법인과 실치사법 (기업살인법)

# 우리나라에서의 도입방법

97

## 논점

- 형법의 특별법?
- 산재범죄 처벌의 특별법?
- 집행구조?





- 현대국가의 안전참사는 대부분 인재
  - 누군가 돈을 벌려고 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위험
- 안전에 관한 규칙(rule)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사회 → 사고왕국
  - 우리나라가 전형적인 예에 해당
    - 세월호 참사
    - 구미불산 사고
    - 삼성불산 누출사망사고
    - 삼성반도체 백혈병 등 직업병
    - 삼성 하청의 메탄올 실명사고
    - 가습기 살균제 참사

} 모두  
동일한  
구조적  
참사

99

- 세월호 참사
- 구미불산 사고
- 삼성불산 누출사망사고
- 삼성반도체 백혈병 등 직업병
- 삼성 하청의 메탄올 실명사고
- 가습기 살균제 참사

} 모두  
동일한  
구조적  
참사

- 안전범죄로 다루지 않고서는 구조적 예방 불가능
- 안전범죄로 다루려면 기본 정부조직  
→ 경찰과 검찰

현행 → 수직적 분할

검찰

일반  
경찰

기소권



수사권

101

현행 → 수직적 분할

검찰

일반  
경찰

(중앙)검찰

(지방)검사장  
직선제

(중앙)경찰

지방자치  
경찰도입

102





## 현행 + 수평적 분할

검찰

일반  
검찰

공  
수  
처

안전  
검찰

일반  
경찰

일반  
경찰

특수사법경찰

식  
품

환  
경

노  
동

소  
비  
자

103

### 산재범죄 처벌의 특별법의 형태로 하려면?

- 새로운 입법 불필요
- 산업안전보건법 벌칙조항 개정으로 가능
  - 사업주를 '개인사업주'와 '법인'인 경우로 명확히 구분하고,
  - 개인사업주의 경우에는 현행 유지
  - 법인의 처벌은 경제벌로 하되 벌금액을 책임역량에 비례하도록 함

## 예시

현행	개정안
제66조의2(벌칙) 제23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제 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 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6조의2(벌칙) 제23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1항 <u>또는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u> ----- -----자는 사업주가 개인 인 경우----- -----처하고, 법인인 경 우 법인 해당사업장 매출액의 0.5% 이상 3%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감사합니다.

한성대학교 박두용  
[dooyong@hansung.ac.kr](mailto:dooyong@hansung.ac.kr)



# MEMO

# MEMO

# MEMO

# MEMO

# MEMO

# MEMO

# MEMO